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마케팅인슈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9. 10.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 불합리

주식회사마케팅인슈 보험대리점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모집시,

(가) 보험사가 제공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17.3.17.~'17.10.2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모집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보험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 따른 통화품질모니터링업무 등 불완전판매 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통화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17.3.17.~'17.10.2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건의 통화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등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가 불합리하므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사로부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받아 설명하고, 동 계약건의 전체통화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람